

「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
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
-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 「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」 제15조

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2) 필요성 : 기업 발굴, 선정, 사업관리, 컨설팅,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·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,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하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업무 전반

- 1)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) 창업기업 발굴 및 글로벌 진출 지원
- 3) 컨설팅, 콘텐츠 제작, 현지 체류비 지원
- 4) 선정기업과의 협약 체결·변경·해약
- 5) 선정기업 및 사업성과의 DB 구축·관리 등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6. 3. ~ 2027. 2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12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비고
120	24	84	12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(251226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자. 부서의견 :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- 「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」 제15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○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○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○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1.1. 시행)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관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업발굴, 컨설팅, 현지 네트워킹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,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창업관련 데이터, 전문인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경험이 있어 적합할 것으로 보임.
- 이전 안건 제출시 지적사항이었던 비용추계서는 보완되었으나, 관련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사업 추진 계획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, 성과 관리 및 지도·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